



금 용 감 독 원

수신 김도무 님
(경유)
사본수신
제목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김도무 님)

1. 2025.3.7.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다수의 신청 건 접수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귀하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귀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K760), 혼합성 고지질혈증(E782) 진단으로 주치의 처방에 따라 위고비프리필드펜을 투여하였으나 농협손해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가 체중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관련 보험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가. 본건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비만(E66)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 및 보험회사 안내자료 참고),

- 본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치의 소견서 등 자료 등에 따르면, 귀하는 2024.11월부터 서울삼성내과의원에 통원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K760), 혼합성 고지질혈증(E782) 진단 하에 '위고비프리필드펜' 처방을 받았으며, 해당 약제 비용이 영수증상 비급여 청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나.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에 따르면,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의 쟁점은 귀하가 투여한 주사제가 단순 비만치료제인지, 아니면 고지질혈증, 지방간 등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치료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위고비프리필드펜’에 대한 설명(출처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으로, ‘효능 효과 : 1. 이 약은 아래와 같은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포함한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한다. -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 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이상혈당증 (당뇨병 전단계 (pre-diabetes)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² 이상 30 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2. 이 약은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²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 (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된 것으로 보아 본건 주치의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간, 고지질혈증 등 합병증 치료 목적이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자문 결과 위고비 치료 시행 목적 : 체중 감량이고 질병 치료 목적은 과체중(overweight : E66.9: BMI25~29.9에 해당됨) 질병 치료 목적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귀하가 투여한 주사제(위고비프리필드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치료목적이 맞는지에 대해 동시감정을 통하여 확인을 진행하려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를 달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라. 본건 분쟁과 같이 당사자간 의학적 판단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도 신체감정촉탁결과(의학적 판단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 등)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본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귀하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을 선정,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담당자가 피보험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해왔으니

- 피보험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피신청인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과거 타 병원에서 받은 검사기록 등 관련 의료기록 일체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협손해보험(주) 소비자보호팀 김경순 담당자 (02-6967-7665)
- 확인자 : 농협손해보험(주) 소비자보호팀 강현덕 담당자 (02-3786-7504)

(보험회사의 연락이 늦어질 경우 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르면,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귀하께서는 의료자문결과는 “위고비 처방은 적정하였다.”, “위고비 치료는 질병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답을 얻었다는 입장이지지만, 본건 약관의 구조는 <보상하는 사항>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단서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질병 치료 목적이냐 여부만으로 보험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보이며, 면책사항인 비만*(E66)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건 의료자문결과는 “과체중(E66.9)의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취지입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 측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우나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원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본 건은 약관 조항,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우리원으로

서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거나 추가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본 건을 종결하오니 이 점 널리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분쟁조정2국 제3보험1팀

선임조사역 12/30 이성진 팀장(S) 전결 12/30 유명신

합의자

일상감사

시행 제3보험1팀-6598 (2025.12.30.)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5247 팩스번호 02-3145-5249 / sjlee23@fss.or.kr / 비공개(6)